

2014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및 제출서류 안내 요약

구분	세부내용	제출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 적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공제대상자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공제금액</th> <th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공제요건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생계요건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나이요건^{주1)}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소득금액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본인</td> <td rowspan="1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명당 150만원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거여부 불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rowspan="10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</td> </tr> <tr> <td>배우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양 가족</td> <td>직계비속·입양자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등록표상 의 동거^{주2)}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만 20세 이하</td> </tr> <tr> <td>직계존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만 60세 이상</td> </tr> <tr> <td>형제자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만20세 이하, 만60세 이상</td> </tr> <tr> <td>기초수급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위탁아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만 18세 미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주1)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주2) 학업·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.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▶ 나이 적용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만 20세 이하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만 60세 이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만 18세 미만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만 70세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94.01.01 이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54.12.31 이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97.01.01 이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44.12.31 이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제대상자	공제금액	기본공제요건			생계요건	나이요건 ^{주1)}	소득금액요건	본인	1명당 150만원	동거여부 불문	-	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	배우자	-	부양 가족	직계비속·입양자	주민등록표상 의 동거 ^{주2)}	만 20세 이하	직계존속	만 60세 이상	형제자매	만20세 이하, 만60세 이상	기초수급자	-	위탁아동	만 18세 미만	만 20세 이하	만 60세 이상	만 18세 미만	만 70세 이상	1994.01.01 이후	1954.12.31 이전	1997.01.01 이후	1944.12.31 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통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(신규 및 변동자) ✓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퇴거사유증빙서류 ✓ 입양관계증명서 ✓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✓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✓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의 사본(장애수첩·복지카드)
	공제대상자			공제금액	기본공제요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생계요건	나이요건 ^{주1)}		소득금액요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	1명당 150만원	동거여부 불문	-	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양 가족		직계비속·입양자	주민등록표상 의 동거 ^{주2)}		만 20세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직계존속			만 60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형제자매			만20세 이하, 만60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초수급자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탁아동		만 18세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만 20세 이하	만 60세 이상		만 18세 미만	만 70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94.01.01 이후	1954.12.31 이전		1997.01.01 이후	1944.12.31 이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추가공제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경로우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명당 100만원</td> <td>만 70세 이상(1944.12.31 이전 출생)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명당 200만원</td> <td>장애인·상이자·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</td> </tr> <tr> <td>부녀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50만원</td> <td>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, •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•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</td> </tr> <tr> <td>한부모가족공제^{주1)}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00만원</td> <td>•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·입양자가 있는경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주1)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※ 6세이하, 출생·입양, 다자녀 추가공제 폐지 →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개정</p>	추가공제		공제금액	공제대상		경로우대자	1명당 100만원	만 70세 이상(1944.12.31 이전 출생)	장애인	1명당 200만원	장애인·상이자·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	부녀자	연 50만원	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, •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•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	한부모가족공제 ^{주1)}	연 100만원	•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·입양자가 있는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의 사본(장애수첩·복지카드) 																			
추가공제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로우대자	1명당 100만원	만 70세 이상(1944.12.31 이전 출생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	1명당 200만원	장애인·상이자·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녀자	연 50만원	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, •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•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부모가족공제 ^{주1)}	연 100만원	•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·입양자가 있는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금 보 험 료 공 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민연금보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•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</td> </tr> <tr> <td>기타연금보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•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※ 퇴직연금, 연금지속보험료 →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 개정</p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국민연금보험료	전액	•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	기타연금보험료	전액	•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에 대한 전액공제 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민연금보험료	전액	•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연금보험료	전액	•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강(노인장기요양)·고용보험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액</td> <td>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※ 보장성보험료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→ 세액공제로 이동 개정</p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건강(노인장기요양)·고용보험료	전액	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보험료 납입증명서(영수증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강(노인장기요양)·고용보험료	전액	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 별 소 득 공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세액 소득공제 →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 개정 전세계약 연장(갱신)시 차입한 차입금 및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시에도 공제허용 개정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허용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('14.01.0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)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→ 4억원 이하 - 1주택 보유세대가 대체취득한 주택(단, 연말 현재 1주택보유세대이어야 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리금 상환액의 40%^{주1)}</td> <td>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 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 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융기관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원리금 상환액의 40%^{주1)}</td> <td>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</td> </tr> <tr> <td>거주자(개인간)</td> <td>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금융기관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	거주자(개인간)	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✓ 임대차계약서사본 ✓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✓ 원리금상환증명서(무통장입금증 등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기관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주자(개인간)		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리금 상환액의 40%^{주1)}</td> <td>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 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국민주택규모(85㎡)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 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공제금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공제대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융기관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원리금 상환액의 40%^{주1)}</td> <td>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</td> </tr> <tr> <td>거주자(개인간)</td> <td>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금융기관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	거주자(개인간)	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✓ 임대차계약서사본 ✓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✓ 원리금상환증명서(무통장입금증 등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기관	원리금 상환액의 40% ^{주1)}	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3개월 이내 차입 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주자(개인간)		•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•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·후 1개월 이내 차입 • 기획재정부령 이자를 2.9%이상으로 차입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	세 부 내 용		제출서류		
특별소득공제	주택자금공제	구분	공제금액	공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✓ 주민등록등본 ✓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✓ 개별·공통주택가격 확인서 	
	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(상환기간 15년 이상)	이자상환액 ^{주2)}	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가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('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"국민주택규모")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* 기준시가 보는 법: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http://www.kreic.org/realtypric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•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함 		
주1)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2) 공제한도*: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: 1,500만원, 이외 기타 대출: 500만원 - 2011.12.31 이전 차입금: 상환기간 10년이상~15년 미만: 600만원**, 상환기간 15년이상~29년 이하: 1,000만원**, 상환기간 30년이상: 1,500만원 *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통합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함 ** 2003. 12. 31이전 차입분에 한함						
기부금공제(이월금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개정 - 기부금(이월분)* → 소득공제,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 → 세액공제 • 이월된 법정기부금, 특례기부금, 지정기부금 총 공제한도 내 금액 * 기부금(이월금)은 '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해 당해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으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을 말함 				
그밖의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구분	공제금액	공제요건	✓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	
	개인연금저축		연간 불입액의 40% (연 72만원 한도)	2000.12.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		
	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	구분	공제금액	공제요건	✓ 공제부금납입증명서	
	노란우산공제		공제부금납입액 (연300만원한도)	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 • 공제대상 납입한도: 연120만원 					
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		구분	공제금액	공제요건	✓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	
				2009.12.31 이전 가입 2010.1.1 이후 가입		
		주택청약종합저축	납입액 ^{주1)} 의 4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	
		청약저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•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 보유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
주1)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공제한도는 120만원 이하임.(초과 납입금액 제외) *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㎡)을 말함						
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		공제대상	공제금액	공제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✓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	
		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	투자금액의 10%~50%* (소득금액의 50%한도)	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		
*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: 2012년 20%, 2013년 30%, 2014년 50%(5천만원 초과분은 30%)						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		구분	공제금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	
① 신용카드		근로자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(나이제한없음)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적용(형제자매는 해당안됨)				
② 현금영수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금액: ㉠ + ㉡ + ㉢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㉠ 신용카드 사용분 15% ㉡ 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 30% ㉢ 추가공제를 사용분^{주1)} 10% 주1)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체크카드의 근로자본인 사용금액 증가분을 말함 				
③ 직불카드·체크카드 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한도: Min(총급여액의 20%, 연 300만원) *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: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				

구 분		세 부 내 용		제출서류	
그 밖의 소득공제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5. 12.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설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	
		공제대상자	공제금액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요건 :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: 공제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	납입액*의 40% (연240만원 한도)		
		*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임			
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*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개정 * 종합한도 적용대상 : 주택자금공제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금액, 주택마련저축, 투자조합출자 등 (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)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금액을 말함. 			
과세표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소득공제 - 그 밖의 소득공제 +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			
산출세액 (과세표준 x 소득세기본세율)		과세표준		소득세 기본세율	
		1,200만원 이하		과세표준의 6%	
	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	72만원 + 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5%)	
	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	582만원 + (4,600만원 초과금액의 24%)	
	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	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	
1억5천만원 초과		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			
세액공제	근로소득세액공제	산출세액	세액공제금액	공제한도	
		50만원 이하	산출세액의 55%	연 50만원 ~ 66만원 (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)	
		50만원 초과	275,000+50만원 초과금액의 30%		
		<총급여액>		<공제한도>	
	5,500만원 이하 : 66만원		Max[(66만원-(총급여액-5,500만원) x 50%), 63만원]		
	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 : 63만원		Max[(63만원-(총급여액-7,000만원) x 50%), 50만원]		
	7,000만원 초과 : 50만원				
	자녀세액공제	자녀양육비, 출산·입양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→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개정			
		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	세액공제액		
	자녀, 입양자, 위탁아동 (손자손녀 등 제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 2명 이하 : 1명당 15만원(2명 30만원) 자녀 3명 이상 : 연 30만원 + (자녀수-2명) x 20만원 		
연금계좌세액공제	연금계좌 소득공제 →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 개정				
	구분	공제대상금액	세액공제액		
	퇴직연금 ^{주1}	근로자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	납입액(연400만원한도) x 12%		
	연금저축	근로자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			
주1)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(확정기여형 및 IRP)을 말함					
특별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→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 개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형료납입증명서 	
		구분	공제대상		세액공제액
	보장성 보험료	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	납입액(연100만원한도) x 12%		
	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^{주1}	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	납입액(연100만원한도) x 12%		
주1) 보형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에 “장애인전용보험”임이 표시					
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15%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(3%이하 금액은 해당없음) 의료비 소득공제 → 의료비 세액공제로 전환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확대(금액기준 삭제) 개정 - 의료비공제금액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→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				
	공제대상자	공제대상 의료비	공제한도	세액공제액	
	본인, 65세이상자, 장애인	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나이·소득금액에 제한없음)에 지출한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% 초과하는 의료비	한도없음	의료비공제대상 금액 x 15%	
	그 밖의 부양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치료·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치료·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(1명당 50만원한도)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·임차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	연700만원 한도		
* 미용·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→국세청자료 제출가능 안경영수증: 시력교정용확인분 보청기및장애인보장구 영수증:사용자성명확인분 의료기기구입영수증: 의사처방전과판매자가 발행한 것으로 의료기기명기재 					

